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언론 특파원 안전보장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8월 3일

청 원 인

성 명 : 이 일 학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일학
건명	언론 특파원 안전보장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8월 2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박정인 외 11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p> <p>제 14회 정기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언론 특파원 안전보장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6년 상반기에만 언론인 5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미국 CNN NEWS 특파원 David McKenzie 는 중국의 한 고위공직자 재판에 관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 담당 법원으로 향하던 중, 중국 경비병들에 막혀 인민군 차로 이송된 후 십여 분간의 입송 끝에 베이징 시내에 강제 하차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는 일본 대지진에 관한 취재를 위해 기자들을 보냈으나, 허술한 관리로 취재진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팔레스타인에서도 KBS 용태영 기자가 취재도중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소관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영사 중 언론인들의 안전 보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특별 영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저희는 외무공무원법 제 33조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언론 특파원 안전보장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제 33조 (재외공관에 두는 사건·사고 영사 파견)</p> <p>①외교부장관은 모든 해외 재외 공관에 2명 이상의 사건·사고처리 담당 영사를 파견한다.</p> <p>1.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의 구성은 외무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에 의거하여 정한다.</p> <p>②담당 영사는 현지법에 의거하여 취재·보도의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언론인들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p> <p>1.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는 언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 한다.</p> <p>2. 여행금지 국가의 취재목적의 방문 시,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는 언론인의 신원을 항상 파악해 보고해야함.</p> <p>③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가 업무도중 신체상·정신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정한다.</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2016년 3월 경 미국 대형 언론사 CNN NEWS의 David McKenzie 중국 특파원이 중국 고위공직자 재판 취재를 위해 법원을 방문하던 중 현지 경비병에게 제재 당했고, 인민군 차에 강제 입송·송환 이후 10여 분 동안 이동되어 베이징 시내에 강제로 내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2016년 상반기에만 언론인 55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대지진에 관한 취재를 위해 기자들을 파견하였으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취재진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KBS 용태영 기자가 팔레스타인에 파견되어 취재하는 도중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해외 특파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권법에는 취재, 보도를 위해 해외 출국을 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체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지는 책임에 대한 내용은 법률로 명시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언론 특파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언론 특파원 안전보장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개정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현행 외무공무원법 33조항 신설

제 33조(재외공관에 두는 사건·사고 영사 파견)

①외교부장관은 모든 해외 재외 공관에 2명 이상의 사건·사고처리 담당 영사를 파견한다.

1.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의 구성은 외무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에 의거하여 정한다.

②담당 영사는 현지법에 의거하여 취재·보도의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언론인들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는 언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 한다.

2. 여행금지 국가의 취재목적의 방문 시,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는 언론인의 신원을 항상 파악해 보고해야함.

③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가 업무도중 신체상·정신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현행	신설
<h1>신설</h1>	<p>제 33조 (재외공관에 두는 사건·사고 영사 파견)</p> <p>①외교부장관은 모든 해외 재외 공관에 2명 이상의 사건·사고처리 담당 영사를 파견한다.</p> <p>1.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의 구성은 외무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에 의거하여 정한다.</p> <p>②담당 영사는 현지법에 의거하여 취재·보도의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언론인들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p> <p>1.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는 언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 한다.</p> <p>2. 여행금지 국가의 취재목적의 방문 시, 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는 언론인의 신원을 항상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p> <p>③사건·사고처리 담당영사가 업무도중 신체상·정신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정한다.</p>

3. 기대효과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해외 특파원의 안전 보장, 기자들의 취재 의지 고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자국민 보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